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66	상해, 명예훼손
피 고 인	김낙찬 (000000-00000000), 운전사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검사	
검 사	천○○(기소), 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국선)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왼쪽 손목 위에 올리고 사정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양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쳐서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하는 상황으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현수막에 게시한 내용 중 '자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는 있었음을 전제로 유형력 행사의 주체가 피해자 자신이라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게 과호흡 증후군 등 다른 원인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누구로부터도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자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바, 위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 _____

 판사 권○○ _____

 판사 김○○ _____